

산업보건정책과 산업전문간호사제도

이 채 필
(노동부 산업보건과장)

산업보건정책과 산업전문간호사제도

이 채 필

노동부 산업보건과장

1. 직업병 실태

○ 지금까지 직업병 유소견자의 대부분(97.7%)은 소음·분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율 저조('95년) : 0.09%

(특수 0.34%, 임시 2.04%, 진폐 11.51%)

소음성난청 1,943건(58.5%), 진폐증 1,302건(39.2%), 크롬중독 18건(0.5%), 특정화학물질 중독 16건(0.5%), 납중독 13건(0.4%), 유기용제중독 11건(0.3%), 유해광선장애 9건(0.2%), 수은 기타 8건(0.2%)

※ 일본의 직업병유소견율('94년) : 3.6%

(일본의 직업병유소견자 개념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모두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요관찰자(C), 직업병유소견자(D1)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율 추세 변화 :

$\frac{80\sim'91\text{년}}{0.2\% \text{ 수준}}$	→	$\frac{'92 \sim '93\text{년}}{0.1\% \text{ 수준}}$	→	$\frac{'94\sim'95\text{년}}{0.1\% \text{ 미만수준}}$
('82~'85년 0.27% 절정)				

- D₁ + D₂ 발견율 추세 변화 :

$\frac{'87\text{년}}{2.46\%}$	→	$\frac{'95\text{년}}{5.51\%}$
------------------------------	---	------------------------------

- 요 관 찰 자 비 율 :

$\frac{'94\text{년}}{11.1\%}$	→	$\frac{'95\text{년}}{15.7\%}$
------------------------------	---	------------------------------

○ 최근의 직업병 발생

- 조선업체 · 자동차 제조업체의 도장작업 근로자의 유기용제 중독으로 골수장애 · 중추신경계 장애 및 간장질환 요관찰자 증가
- 용접 작업 근로자의 망간중독
- 2-브로모프로페인에 의한 전자부품업체 근로자의 생식기능 및 골수기능 장애
- VDT 취급 근로자의 근골격계 장애 발생 증가
('93년 2명, '94년 20명, '95년 128명, '96년 345명)

2. 문제점

- 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실시기관의 실천의지 부족 (유해인자 누락, 작업환경공정 검토 부족, 판정 소신, 건강증진 · 작업환경개선 조치의견 미비)
-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보호 · 증진에 대한 소극적 자세, 주체적 노력 결여
- 완벽하지 못한 검진 실시에 대한 근로자의 방관자적 자세 및 일선기관의 지도감독 · 소홀
- 건강진단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정기진단 위주 운영, 추적관리소홀)
- 직업병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
 - 근로자 : 모든 질환의 직업병시, 확대해석 비약
 - 사업주 : 직업병 유소견 발생 부정 · 은폐 기도
 - 검진기관 : 적용기준 편차
-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증가에 따른 관리 한계
 - ※ 국내 사용 31,000여종(세계 10만여종), 허용기준 제정 697종, 산안법상 규제물질 116종
- 형식적인 작업환경측정 · 건강진단 반복
 - 유해공정 보유 사업장 현황 ('93년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 소음 24,384, 분진 16,227, 유기용제 14,879, 특정화학물질 2,541, 납 1,384, 고열 · 한냉 등 9,403개소
- 전문인력과 시설 · 장비 부족

3. 산업보건 여건 변화

-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 종류 다양
 - 소음성난청, 진폐증 분포 감소, 중금속·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증가
- 생산 기술의 혁신에 따른 작업의 고도화,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서비스산업 비중 증가
 - 저농도 장기 폭로에 의한 근골격계장애 등 새로운 직업병 발생
- 노동력의 중고령화(50세이상 '90년 7.3%→'95년 12.8%)로 건강취약 연령층 증가 및 여성근로자 취업 확대('90년 7,509천명 47.0% → '95년 8,364명 48.3%)
 - 각종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업무상 스트레스 가중 등 순환기·소화기 질환 증가
- 직업병 발생 잠복기 경과에 따른 노·사의 불만 표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
 - 노·사간 단협 사항의 주요쟁점 부각 예상

4. 산업보건정책 방향

가. 직업병 조기발견을 위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내실화

-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기존 실시기관은 미발견되나, 노조 의뢰기관·산업보건연구원에서는 건강장해의심자 발생
 - 공급자 위주가 아닌 고객 중심의 제도 운영
 - ※ 실시기관·사업주·근로자 :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 건강진단이 의례적인 연례행사가 되어서는 아니됨
- 검진시 문진표('94년 시행 26종) 사용 철저히 건강진단 실시 효과 거양
 - 과거 질병, 최근 3개월이내 증상(식욕·두통·피곤·졸리움·신경과민·기억력감퇴·말더듬·성생활 등)을 근로자가 직접 기재
 - 건강진단 실시 3일전까지 주어 검진당일 제출받아 결과 판정시 참고
 - 문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생활습관·작업중사경력·취급유해물질·작업방법 등도 근로자와 면담을 통하여 파악하고 결과 판정에 참고

○ 검진 누락방지 및 검사항목 활용

- 대상 유해인자·근로자 누락 방지 및 2차 검사항목중 필요시 의사가 할 수 있는 검진항목 최대한 활용(신경학적 검사)
 - ※ 건설일용 근로자 건강진단 일제 실시기간 설정 지도
- 치과(구강)검사 철저(불화수소·염소·염화수소·질산·황산 취급근로자)
- R 판정자는 10일 이내 정밀검진 실시

○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과거검진결과와 연계한 검진 실시

- 피검진 사업장의 작업조건·방법, 취급하는 유해물질, 과거 검진결과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사전 활용
 - (소음·분진·납·크롬·카드뮴·석면 등 중금속, 유기용제, 특화물 취급 근로자)
 - ※ 업종별 작업공정별 특수검진 대상 유해인자 및 착용보호구 표준안내자료 활용

○ 내원 검진의 실시 확대

- 출장 집단검진의 취지를 감안한 검진실시
 - ※ 50인이상 사업장에 작업장실태 감안 목적이나, 작업시간 손실 감소, 검사항목·시료채취 제한 등 편의 위주로 변질되어 형식적 검진, 사후관리 소홀 등 문제점 지적
-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원검진 실시중이나, 검진을 둘러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0인이상 사업장도 노·사(산안위)가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내원검진 실시 확대

○ 임시검진 실시 활성화

- 자각증상호소자, 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직업병발생 우려에 대한 폭넓은 지도)
-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발휘 및 근로자(순회) 건강상담실 운영 실효성 제고
 - ※ 순회상담 실시 일정 사업장 게시 등 사전 예고

○ 질병 유소견자(D₁, D₂) 및 요관찰자 사후관리 등

- 의사소견(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치료 등) 이행 여부 확인, 사후관리 미이행시 의법조치 (500만원이하 벌금)
- 검진 미실시 사업장의 의법 조치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작업전환 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없도록 지도하며, D₁ 유소견자의 작업전환 이후 추적 실시
- 산안위, 근로자 대표의 요구시 사업주나 검진기관이 검진결과 설명(본인 동의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공개 불가)

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건강보호

○ 밝고 깨끗한 작업환경 만들기 운동 전개

- 업종별 깨끗한 작업환경 모델 개발 보급 및 시범 사업장(200개소) 선정·지원
(기술지도, 교육지원, 시설 개선, 장비구입 비용 지원)

- 작업환경분야 : 유해공정에 대한 환경개선, 유해물질 사용·취급·저장관리
- 작업관리분야 : 작업공정 및 작업방법의 효율적 개선(저비용·고효율),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 등
- 건강관리분야 : 근로자의 피로·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게시설, 근로자 건강증진, 세면장, 화장실 등 개선

○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

- 측정시기 선정 및 측정·작업환경개선 등에 근로자대표 참여지도 (취업규칙·안전보건규정에 측정시기·근로자대표 참여 명시)
 - ※ 근로자 대표 등의 요구시 10일 이내 측정결과 설명회
- 유해물질 취급 부서에 대한 측정(항목) 누락 방지, 측정방법 및 측정시간 준수 지도
 - ※ 작업환경측정 실시규정
- 측정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하여 노출기준 초과부서의 개선 결과 또는 개선 계획서의 적정 여부 지도
- 건강진단시 활용되도록 자료 제공, 조기 측정 실시
- 노출기준 미만 유지 사업장·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횟수 조정으로 측정주기 완화 가능
 - ※ 발암성(추정)물질·수은·납·크롬·카드뮴·망간·비소·니켈·베릴륨은 제외

○ 대기업 그룹 및 업종별 작업환경실태조사 발표

- 30대그룹, 자동차 제조업 및 전자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년 2회 노출기준 초과 현황 등 작업환경관리실태 비교 평가·발표로 그룹차원의 작업환경개선·경쟁 유도

○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조사결과보고서 관보 게재 및 사업주·지방노동관서 통보·지도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불이행시 의법조치

○ 제조·사용 허가 물질관리 강화

- 석면 등 9종의 수입현황 지방노동관서 통보, 미허가 제조·사용업체 단속 입건 및 미허가 사업장 근로자임시건강진단 명령

○ 건강보호카드(CIS) 개발 보급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이 취급 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5~6개 항목(MSDS 16개항목)을 수첩식으로 개발 보급 추진

○ 법정관리 대상 물질 추가지정 및 유해물질 노출기준 정비

- '97~'99년까지 매년 10종정도의 발암성 등 인체 독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거나 신종 직업병 유발 가능물질에 대하여 지정
- 대상물질 분류 및 노출기준 제정위원회 구성, 의견 수렴

○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 차등관리

- 발암성(추정)물질 등(32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중 1,000개소에 대하여 유해인자 노출 수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의 설치 여부 및 성능, MSDS 이행실태, 유해물질표시, 사용허가, 도급인가 등을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합동점검(특별관리)
- ※ '96년 21종, '97년 11종 추가 (삼산화 안티몬, 황화니켈, 크롬화아연 등)

- 특정화학물질(17종) : 디클로로벤지딘, 오르토-톨리딘, 베릴륨, 벤지딘 염산염, 석면, 벤젠, 베타 프로피오락톤,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 아미드, 염화비닐, 클로로메틸에테르, 황산디메틸, 요드화메틸, 삼산화비소, 중크롬산, 크롬산, 포름알데히드
- 유 기 용 제 (3종) :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 기 타 (1종) : 코크스

- 제조·사용금지 물질 취급 사업장은 즉시 작업중지토록 하고 불이행시 입건하며 미허가 물질 취급 사업장 엄중 처벌(취급근로자는 임시검진 실시), MSDS 미작성 업체는 즉시 작성토록 시정 조치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96 하반기 측정결과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연·제1종 분진(광업제외) 노출기준 초과 및 '95~'96년 직업병 발생 사업장 중 1,000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공단이 기술 지도(중점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정착 지도

- '96.7월 부터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운반·저장·사용 사업주가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비치·교육 및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케 하는 제도 ('98년까지 31,000여종 DB화하여 PC통신 제공)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②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량에 대한 정보
③ 유해성의 확인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화재시 방재 요령	⑥ 누출·사고시의 대책
⑦ 취급 및 저장	⑧ 폭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학적 자료	⑫ 환경의 영향에 관한 사항
⑬ 폐기시 고려사항	⑭ 운송시 주의 사항
⑮ 관련법 규정에 대한 정보	⑯ 기타 작성일시·작성자 등

다.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서비스 개선

- 측정·검진기관 (진폐포함)에 대한 인력·시설 및 설비기준 등 지정요건 점검·재심사
 - 부적격기관 제재, 적격기관 명단 사업장 통보·활용
-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기관의 신뢰성 제고
 - 측정·검진기관 정도관리

구 분	항 목	주 기	참 여 기 관
측 정 분 야	금 속·유 기 용 제	상·하반기	측정기관·신규지정 희망기관
검 진 분 야	· 분 석 · 진 폐	혈중연·요중마노산	특수검진기관·신규지정 희망기관
		진 폐	특수검진기관·신규지정 희망기관
	· 청 력	청 력	진폐검진기관 ('97년부터) 특수검진기관·신규지정 희망기관

- 지방노동관서별로 측정·검진기관이 없는 곳의 지정 확대 적극 추진 (지역 주민의 신뢰도 높은 기관 중심) 및 정도관리 참여 안내

※ 관내 소재 지정기관이 없는 관서

- 측정기관 : 서울청, 춘천, 영월, 익산, 군산, 제주, 보령(7개소)
- 특수검진 : 춘천, 영월, 진주, 익산, 군산, 제주(6개소)

- 노·사간 측정·검진관련 마찰 우려, 과거 유해인자 누락, 보건관리자나 노조에서 의견 제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이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측정·검진에 대한 노·사대표·보건관리자·노무담당자·근로자·노동조합 면담을 통하여 측정·검진 실시상황 점검 및 만족도 조사로 부실·불편사항 개선 도모
- 특수검진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지원으로 질적 경쟁 촉진 및 사업주(산안위)의 선택 기회 확대

○ 유해부서 근로자 생물학적 감시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우려(석면·망간·도장 등), 유해인자로 인한 자각증상 호소자 다수 발생, 검진·측정관련 사회적 물의 야기, 발암성(추정)물질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등에 대하여 감독관, 한국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이 합동으로 유해요인별 작업환경·건강관리실태 점검 (1,2차 검사항목 통합) 및 개선방안 강구,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지침 개발 보급

○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개선

- '97.2.26 건강진단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 산업보건연구원장)를 구성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제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외국의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하여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실천 가능한 개선안 도출 ('97.7)
- 현행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근로자 선정이 형식적이라는 지적, 건강진단 주기의 확실성, 검사항목의 부적절 등 건강진단제도 자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작업관련 근골격계 장애를 비롯하여 직업병 예방과 감시를 위한 근로자들의 기대 욕구 충족에 미흡하고, 복합 유해물질에 의한 새로운 건강진단 방법의 개발 및 검증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시점임
- 산업보건연구원과 노동부에 개선안 제안창구 설치·운영중이므로 전화·서신·FAX 로 의견 제시 기대

라. 직업병 예방활동 강화

○ 실효성있는 근로자건강상담 실시 및 무료 보건상담센터 설치 운영

- 개별 근로자 위주의 건강상담 내실화
- 직업병 취약 사업장·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검진기관 의사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순회상담 실시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장의 자각증상 호소 근로자, 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등에서 임시 검진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활용
-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선정 및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상담일정을 당해 사업장에 게시토록 조치

○ 근로자건강증진운동 전개

- 검진결과 건강요관찰자(C)가 많은 사업장을 위주로 건강진단 및 운동·보건·영양지도 등 기법 및 교재 개발 보급하여 사업장에서 자율 실천 유도('97년 500인이상 사업장은 기법·교재지원, 500인 미만은 공단에서 직접 지도)하여 질병자로의 이행 방지

○ 과로성 질병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 뇌·심혈관질환 발생 규모·사망자 및 소속 사업장 특성, 사인의 질병별 분포, 업종별, 직종별 발생을 조사
- 과로성 질병 예방지침 개발

○ 직업성 암, 작업관련 근골격계장애 발생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 직업성 암 유발 가능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작업실태와 작업관련 근골격계장애 등 발생 가능 업종에 대한 작업환경 요인 및 근로자 작업실태조사
-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지침 개발

○ 여성근로자 작업환경실태조사 및 건강보호대책 수립

- 섬유·전자 등 여성근로자 다수 취업 사업장 및 도장·용접 등 유해 위험 사업장(100개소) 실태조사 및 여성근로자 건강관리지침 개발·보급
- 근로여성의 건강보호 관련 당사자의 책무, 작업환경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노동계·사업주·여성계·보건의료계·정부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후 근로여성 보호현장 제정·활용

○ 비정규 근로자의 보건관리체계화

- 건설근로자 복지카드에 보건교육, 건강진단 실시 여부 포함
- 건설 일용 근로자 건강진단 일제 실시기간 설정 집중 지도
(매년 5월, 11월), 단체협약에 건강진단 실시 대상·시기 명시토록 단체교섭 안내, 건설 현장 근로자 보건수첩 자체 발급·소지 권장(검진일자·검진의료기관·검진종류·실시사항 확인) 및 적절한 사후관리와 미실시 사업주 의법 조치 강화

○ 근로자건강관리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 근로자 건강관련 정보관리활용 체계 확립 및 산업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산업보건지표 개발
- '97년중 업무분석 및 관련기관 담당자 팀 구성, 산업보건지표 개발

마. 노·사의 자율적 보건관리활동 활성화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 강화

- 심의기능외에 의결기능 추가 부여로 근로자 참여 확대

사업장 자체 산재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및 산재통계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 미의결 및 의견 불일치시 노·사위원 합의로 중재기구 또는 제3자 중재 가능

-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별도 설치 의무화 (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 설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 '95. 7월부터 운용해 왔으나 이번에 법제화하여 명예감독관의 위촉 대상·절차·업무범위를 정하여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 노조간부 또는 근로자, 노·사단체 및 산재예방 전문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종전에는 사업주의 동의)하며,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참여, 법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사업장 감독 참여, 급박한 산재 발생 위험시 작업중지 요청 및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 업무 수행

○ 안전·보건관리자 권한 및 역할강화

- 안전·보건관리자가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에게 건의·지도·조언한 경우 사업주·관리감독자 등은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지도·조언사항이 이행되도록 함
-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완화로 인한 사업장 보건관리 소홀 방지 (기 채용된 보건관리자의 유지권장지도, 위반시 행정지도)
- 안전·보건관리자 직무수행지침 모델 보급 및 전 문화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능력향상 및 경쟁유도

○ 근로자의 알권리 확대

- 근로자 대표의 정보요청 범위 확대 : 산안위 의결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내용+작업환경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
- 근로자 대표가 입회할 수 있는 안전·보건활동의 범위 추가 : 작업환경측정·평가+건강 진단, 안전보건진단, 기계기구자체검사
- 근로자에게 설명회 개최사항 촉구 : 작업환경측정·평가결과+건강진단결과

○ 민간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대상 : 사업주 등 → 사업주, 노·사단체, 산재예방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 내용 : 산재예방사업 소요 경비 보조 → 산재예방 장비·시설구입, 교육·연구, 안전문화 운동추진 기타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비보조 지원 (진폐재해자협회 등)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기술지원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재정능력이 취약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보건관리기술지원을 통하여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자율보건관리능력 진작
- 대상은 발암성물질 취급,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허용농도 초과 사업장으로서 강제 선정하지 않고, 직업병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식고취를 위하여 자발적인 지원 신청이있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함
- 지원 내용은 보건관리지도 년12회(의사2회, 산업위생기사 4회, 간호사 6회 방문지도), 작업환경측정·특수검진 각각 년2회 실시하고 측정결과 설명 및 작업환경개선 지도, 특수검진결과에 대한 건강상담·보건교육, 직업병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의 사후관리, 건강증진지도, MSDS 작성, 산업보건 정보 제공(지원기관은 사업장별로 1년원칙)
- 실시기관은 보건지도·작업환경측정·특수검진을 하나의 기관에서 모두 수행가능한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함
- 사업수행 실태 평가를 강화하며, 지원대상 사업장에 모니터요원을 지정·교육실시 및 사전에 실시기관이 각 사업장에 항목별 Check-list를 제시하고 실천 상황을 자체 평가·보완하도록 유도 (보건관리기술지원 담당자 실명제), 사업장별 보건관리기술지원 사례집 발간으로 서비스수준 향상 경쟁 유도 추진

○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

- 도급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로 도급 사업주는 자신의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의 노·사와 함께 작업장 합동점검 의무화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벌 칙 기 준 : 최고 3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별금, 최저 300만원이하 별금→500만원이하 별금

· 과태료 기준 : 최고 300만원이하 → 1천만원 이하

최저 100만원이하 → 300만원 이하

5. 산업보건업무의 전문화와 산업전문간호사제도

○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증진을 위해서는 유해물질·작업환경 관리와 질병유소
건자·건강요관찰자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 뒷받침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의학전문의, 산업전문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 인력 양성 긴급
- 전문화된 교육기회 확대

○ 분야별 인력활용 현황과 문제점

- 산업위생관리기사제도는 '83년도에 도입 3,980명(기술사 54명 포함)이 배출되어 그중 488명이 보건관리자로 활동
- 산업의학전문의제도는 '95년도에 도입 243명이 배출되어 직업성질환의 예방·진단·치료·연구업무 담당(의사인 보건관리자 273명)
- 산업간호분야는 1,935명의 일반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업무수행중이나 산업간호사제도가 없음

따라서 병원의 임상간호 중심 교육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작업관련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부족과 외상치료·응급처치·약품제공 등 의료행위에 치중되고 근로자 건강증진·작업환경을 고려한 산업보건관리 활동 미흡

■ 산업간호 전문인력 주요업무 ■

-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건교육·건강관리 상담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직업성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응급처치·상병악화방지 조치·외상치료 등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조치 및 만성질환 관리
-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의 적정배분 지도
-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 건강진단·작업환경 측정 결과 등 산업보건 통계 작성·유지
- 사업장 유해요인 및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건강감시
- MSDS 게시·비치에 따른 건강·보건교육

○ 전문성 보강

- 산업위생학회 발족('97.3)과 더불어 산업현장의 유해물질·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연구·교육활동 진전 기대
- 산업의학전문의 배출 확대 및 일반 의사의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자 건강진단과 사후관리,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및 절차 숙지를 위한 의사면허 취득 국가시험과목 보강 및 의사국가시험 위원으로 산업의학관련 전문가 위촉 확대, 대학의 교과과목 개편 요청
 - ※ 직업병유소견자와 직업성질병이환자, 특수검진결과 건강관리구분판정 몰이해
- 산업간호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전문간호사제도 도입에 필요한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기준에 산업간호분야의 간호사 자격 신설과 수습기관 지정기준 마련, 교육(산업간호과정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과정 설치·운영지원 추진(관계부처 협의)

○ 산업보건업무 전문화 분위기 조성

- 산업위생지도사 활용, 대학(원)에 산업보건 관련학과 증설 추진 및 보건관리활동 수범사례 발굴·홍보로 보건관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인식 개선
- 산재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지원 확대
 - ※ 산업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전문간호사제도 도입 방안

가. 산업간호분야 간호사(산업전문간호사)제도 도입에 필요한 자격 신설과 수습기관 지정 기준마련 및 교과목 설정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 “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기준”에 “산업간호분야의 간호사”자격 신설(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개정)

■ 산업간호 분야의 자격기준 관련 규정 개정 요구(안) ■

5. 산업간호분야의 간호사

- (가)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산업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산업간호사 자격을 가진자

○ 산업전문간호사 “수습기관 지정기준” 마련(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제2조 개정)

■ (산업간호분야)수습기관 지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 요구(안) ■

○ 수습기관 지정 기준

-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간호대학, 간호학과 또는 간호전공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 및 보건대학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산업의학전문의를 있는 사업장과 연계되어 있는 기관

○ “산업간호과정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확정(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제5조 별표 개정)

- 산업간호총론, 산업보건일반, 근로자건강관리, 근로자건강증진 등 4개분야 17개과목(이론 352시간, 실습 256시간)

나. 산업전문 간호과정 조기 설치·운영 요청

○ 관련규정 개정으로 산업전문간호사 제도가 신설되고 수습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및 보건대학원에 산업전문간호사 과정을 조기에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유도
- ※ 외국의 산업간호사 제도

○ 미국

- 1880년에 도입
- 예일, 뉴욕 등 여러 대학의 산업간호대학원에서 산업간호사(Occupational Nurse Practitioner) 인력배출
-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내에 산업간호사 교육지원센터 설립
- 산업간호협회 가입 회원수는 1만 2천여명

○ 영국

- 1878년에 도입
- 산업간호사는 간호사와 위생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
(Nurgienist = Nurse + Hygienist)
- Royal College of Nursing에서 교육후 자격부여
- 현재 10,000여명 자격취득

○ 캐나다

- 1981년 전문간호사자격 공식화
- 산업간호사 수는 약 5천명

○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핀란드 등에서도 산업간호 전문인력을 배출

6. 맺는말

- 산업화의 진전, 유해물질의 증가, 근로자의 중고령화, 잠복기 경과 등으로 직업병 발생 요인이 증가되고 직업성 질병의 양상은 나라별·시대별·관리수준에 따라 각기 다름
-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검진과정 참여, 결과설명 요구, 기대욕구 증가 등으로 산업보건 수요 급증
- 산업보건관련 활동에 대한 부실·불신제기로 서비스의 효용가치 체감 부족
- 현장 중심의 전문성있는 산업보건활동을 지향하며,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인접 관련분야 자격 취득)
- 공급 중심이 아닌 고객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건강진단·측정의 형식적·소극성·집단성·폐쇄성 탈피
 - 건강증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적극성·개별성 경쟁적 협력체제로 신뢰받는 산업보건의 새지평